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6 선고 2023가단2700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5.

판 결 선 고 2024. 3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3,750,000원을 지급하고,

다. 2023. 9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근규

별지